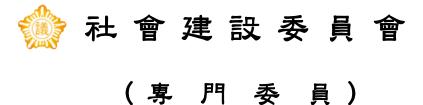
영 등 포 구 의 회 제12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檢討報告書

2007. 7. 6.



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檢討報告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양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○ 제안일자 : 2007. 6. 25.

○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 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함(안제2조제1항)
-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부서장 변경(안제4조제1항·제5조)

관련법규

- 『자연재해대책법』 및 『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』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: 2007.4.5 개정·시행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○ 준비중에 있음.

검토의견

- 2007.4.5.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가 개정 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
- <u>안 제2조제1항에는</u> 위원회 위원수를 "20명이상 40명이하"를 "15명이상 30명이하"로 축소 조정하였으며

○ <u>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는</u> "행정국장"을 "건설교통국장"으로 "자치행정과장"을 "치수방재과장"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7. 6.

보고자: 이 남 식